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

##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김성희 의원)

의 안 번 호	20-150
--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0. 10. .

발의자: 김성희, 강명숙, 김영미, 이민석  
이필례, 정혜경, 최은하

### 1. 개정이유

마포문화재단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으로 구청장이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 포함)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도록 한  
관련 규정 삭제(안 제16조)

### 3. 관계법령: 「민법」 제48조

### 4. 예산조치:

### 5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: 2020. 10. 16. ~ 10. 21.
- 나. 붙임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본문 중 “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 한다)을 무상사용, 수익하거나”를 “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 코  <u>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</u>  <u>유재산(물품을 포함 한다)을 무</u>  <u>상사용,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</u>  <u>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. 다</u>  <u>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</u>  <u>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</u>  <u>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</u>  <u>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</u>  <u>다.</u></p>	<p>제16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 코  <u>청장은 -----</u>  -----  -----  -----.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.</p>

## **【관 계 법 령】**

### **「민법」**

제48조(출연재산의 귀속시기)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.

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 
제2항제1호에 해당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곽경희
연락처	02-3153-8534